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9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태호 · 조정훈 · 윤용근
김용태 · 김종양 · 유용원
김성원 · 김소희 · 최보운
엄태영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② 국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제1항제10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u>이하 이 조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라 한다</u>)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 ① ----- ----- ----- ----- ----- <u>--이하--</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u>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u>
<u><신 설></u>	② 국가는 「 <u>인구전략기본법</u> 」 제32조에 따른 <u>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u>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u>②</u> (생 략)	<u>고려하여 제1항제10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